



고소작업대의 붐대가 파손되어 추락



아파트 외부샤시 코킹공사 중 재해자(방수공) 등 2명이 외부샤시 주변 노후된 실리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15층 샤시 전면부로 붐대를 상승시켜 접근하던 중 붐대 와이어로우프(Ø14mm, 2가닥)가 끊어져 붐대가 급하강하면서 작업대가 7층까지 낙하하며 탑승했던 작업자 1명 사망, 1명 부상



발생 원인

- 붐대 조정용 와이어로우프 노후 및 점검 미실시
- 안전모 미착용
 - 추락방지용 안전대는 착용하였으나,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케이지 구조물에 충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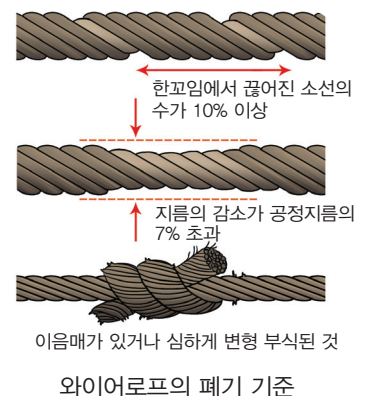
TIP

안전작업

- 1 붐대조정용 와이어로우프의 점검 및 교체**
 - 주기적으로 와이어로우프의 직경감소 및 소선 파단상태를 점검하여 폐기기준에 따라 교체
- 2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) 착용 철저**
 - 작업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, 고소작업차의 작업대(케이지)에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



작업대(케이지)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위험기계 ·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(제2011-39호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

고소작업대의 붐대가 파손되어 추락

고소작업대 사용 시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세요!

